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5,783,522	34,973,506
일반회계	951,919,077	28,557,572
특별회계	213,864,445	6,415,933
공기업특별회계	175,666,413	5,269,9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5,001,750	2,550,05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664,663	2,719,940
기타특별회계	38,198,032	1,145,941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0	2,4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894,529	206,836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241,372	307,241
교통사업특별회계	16,095,146	482,854
대지보상특별회계	273,990	8,220
기반시설특별회계	89,264	2,678
수질개선특별회계	3,819,731	114,592

제 2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93,25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